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1020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창근

피 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의 2017. 3. 27.자 6,8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망 F은 2017. 3. 27.경 자신과 동거하던 E에게 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는 같은 날 동생인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망인은 2017. 4. 7.경 E를 상대로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E가 망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소송 계속중 망인이 2017. 5. 1.경 사망함에 따라 자식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17. 9. 22.경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공시송달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7가단760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115,000,000원을 받은 날 곧바로 그 중 6,800만 원을 동생인 피고에게 보낸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6,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E에 대하여 11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이와 달리 E는 망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조로, 그리고 3년 동안 파출부로 일한 대가조로 위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그리고 위 채권은 E가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을 때 곧바로 성립하므로(이와 달리 판결이 확정되어야 성립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가 피고에게 6,800만 원을 보낼 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갑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E에게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115,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망인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E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위 송금은 일단 망인 등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이전에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렸다가 원리금 변제조로 6,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가 피고에게 원금 3,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E가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E와 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E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추심)을 통하여 12,380,769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추심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여전히 1억 원을 넘고, E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6,800만 원은 이에 이르지 못하므로,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E가 2017. 3. 27.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원고들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666,666원(= 6,800만 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예혁준

1)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된 바도 없다.